「지방정부연구」 제23권 제3호(2019 가을): 53-77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3 No.3 (2019 Autumn)
http://dx.doi.org/10.20484/klog.23.3.3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시·군 기초자치단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도구변수를 활용한 패널회귀분석

김 민 창*
김 애 진**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09~2015년 기간 동안 14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자료를 활용하여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도구변수를 활용한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1인당 GRDP 증가율로 측정한 지역경제 성장에 대해 전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분석과 함께 시·군 각 그룹별로 구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중앙정부 이전재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들 이전재원이 부족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완화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기초자치단체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자구노력에 대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전재원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의 상황에 대응하여 지역의 인적자본 개발, 지역산업육성 강화 등의 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역내총생산, 지역경제 성장, 도구변수, 패널회귀분석

Ⅰ. 서론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관련한 화두는 중앙정부의 지원 당위성으로, 중앙정부는 “왜(why)” 지방정부에 재정지원을 하는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정부[1] 간 재정격차 완화, 외부효과 교정,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등 주로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재정지원의 타당성이 논의

* 제1저자
** 교신저자

1) 본 연구에서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란 지방의 자치정부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타당하나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취지에서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지방자치단체와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된 바 있다(Jun, 1989; Rosen, 1985; Wolf, 1988).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실증분석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나 합의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으며,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이 지역경제 성장을 증대시킨다는 결과와 저해할 수 있다는 상반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먼저, 전자의 견해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체 세부담보다는 이전재원 등의 영향으로 인한 세출이 훨씬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 이전재원은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의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중앙정부 이전재원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김현아, 2007: 2). 반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긍정적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성순(2013)은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지역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의 증가가 지역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결과는 의외라고 설명하면서도, 이러한 결과는 지방교부세가 중앙정부로의 의존을 심화시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재정지원은 지역경제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군 등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세입과 세출규모 등의 지방재정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변수를 포함하여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역경제 성장에 관한 기존연구는 주로 지역의 산업구조, 노동력, 자본, 기술력, 지역자원 등 지역경제 성장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데 관심을 두었으며(김종구, 2007; 김종섭, 2003; 이현훈 외, 2012),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를 연구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성장 관련 기존 연구도 주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제 실시 전후의 재정분권과 관련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재정 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효과를 각각 구분·통제하여 기초자치단체 등의 지역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세입 및 세출 규모 등의 지방재정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지역의 1인당 GRDP 성장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도록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최근 설립된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지방교부세 불교부 지방자치단체[2] 등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료의 입수가 가능한 144개 모든 시·군의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한다.[3] 본 연구가 자치구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가 주목하는 정책변수 중 하나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으로 구성되는데 자치구는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하

2) 분석에서 제외된 지방교부세 불교부 지방자치단체는 수원, 성남, 과천, 고양, 용인, 화성, 창원 등 8개 지방자치단체이다. 창원시의 경우 통합이전인 2010년 불교부단체로 지정된 바 있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기초자치단체는 총 229개이다. 다만, 보통교부세 배분대상이 아닌 자치구와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여타 시·군과 경제적 특성을 달리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에 속해있는 군(부산광역시 기장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는 보통교부세의 배분대상이 아니며,[4] 자치구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형과 자치구와 광역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형 조정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와 달리 자치구재원조정제도인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지원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지역경제 성장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Ⅲ장에서는 GRDP로 측정한 기초자치단체 지역경제 현황 및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현황을 간략히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본 연구에 활용된 실증분석 모형을 제시하고 추정방법 및 분석 자료를 설명한다. 이후 Ⅴ장에서 분석결과를 제시한 후, 마지막 장에서는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

1.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관한 논의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고 있는 재정지원은 주로 지방교부세과 국고보조금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9년 예산 기준 지방정부에 지원된 지방교부세 규모는 총 43조 2,954억원, 국고보조금 규모는 54조 9,963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법적근거, 목적, 용도, 재원 등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

먼저 지방교부세의 법적 근거는「지방교부세법」으로, 지방교부세는 각 기초자치단체의 재원보장 기능과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한다. 재원보장 기능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 행정수행 경비의 부족분을 보장하는 것이며, 재정형평화 기능은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국가와 지방 간 세원 배분 불균형을 보완하는 기능을 의미한다[5]. 지방교부세는 일반적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재원이 많으며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지방교부세가 갖는 재원보장 및 재정형평화 기능에 따라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방자치단체에는 보다 적은 지방교부세가,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지방교부세가 배분되는 특징이 있다.

지방교부세는「지방교부세법」제3조에 따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되며, 같은 법 제4조제2항은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의 97%,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한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총액,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운영된다. 교부 목적과 관련하여 보통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수준 유지를 위하여 일반재원으로 교부되며,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산정방법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나 연도

4) 지방교부세의 의의, 구성 등에 대해서는 Ⅱ장에서 논의한다.

5) 행정안전부(2018a: 1)

중에 발생한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공공복지시설 설치, 국가적 장려사업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교부된다.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2005년 이후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감소의 보전 및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교부되며,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배 가격 인상 시 신설된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의 지원을 위해 교부된다. 용도의 측면에서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조건 부여가 가능한 반면,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용도 지정 없이 지방자치단체 일반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규모면에서 2019년 예산기준으로 보통교부세가 41조 9,965억원에 이르고 있어 전체 지방교부세 43조 2,954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1〉 지방교부세의 배분방식과 기능

중분류	소분류	유형	총액규모 결정방식		배분방식	정책목적
보통교부세		일반	내국세 일정률(19.24%)	97%	공식	재원보장 재정격차 완화
특별 교부세	지역현안수요	특정	내국세 일정률(19.24%)	1.2%	임의	특정사업 장려
	시책수요	특정		0.3%	임의	시책사업 장려
	재난안전수요	특정		1.5%	임의	재해복구
부동산교부세	시·군·구의 재정여건	일반	국세 100% (종합부동산세)	50%	공식	재정격차 완화
	사회복지	일반		35%	공식	사회복지 장려
	지역교육	일반		10%	공식	지역교육
	부동산보유세규모	일반		5%	공식	징세지 원칙
소방안전교부세		특정	담뱃값 개별소비세액의 20%		공식	소방 및 안전관리 목적

출처: 손희준(2017)을 바탕으로 재구성

한편 국고보조금은 특정사업 지원을 위해 용도가 지정된 지원금으로 지방정부 간에 발생하는 외부효과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시정하기 위해 배분되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는 "보조금"을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급부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은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상된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신청과 결정의 절차 및 사후관리, 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임사무에 대한 국가부담은 「지방자치법」, 보조금의 종류 및 근거 등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외 「국가재정법」에서도 보조금 관련 사항을 일부 규정하고 있으며, 각 개별법에서도 사업별로 보조 근거 등을 두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8: 142).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이전재원 중 하나인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는 달리 용도와 조건이 지정되어 특정 목적에 대한 사업 등에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6]에 따라 지방자치단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체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일정한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표 2〉 국고보조금 관련 법률

법률	규정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지방자치법」	위임사무에 대한 국가부담
「지방재정법」	보조금의 종류(제21조, 제23조) 예산신청 시 행정안전부에 보고(제24조)
「국가재정법」	보조금 교부실적, 집행실적의 기획재정부 및 국회제출(제54조)
개별법	보조의 근거, 비용의 국가부담 등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8: 142),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바탕으로 정리

〈표 3〉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비교한 내용을 보여준다.

〈표 3〉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비교

구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근거	「지방교부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목적	지방자치단체 재원 보전 및 재정 불균형 완화	특정사업 지원
재원	·보통교부세: 정률분 교부세 총액의 97% ·특별교부세: 정률분 교부세 총액의 3%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 전액 ·소방안전교부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20%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상
용도	·보통·부동산교부세: 용도 지정 없이 자치단체 일반예산으로 사용 ·특별교부세: 용도 지정, 조건 부여 가능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는 용도 지정 가능	용도와 조건이 지정되어 특정목적 재원으로 운용
성격	·보통·부동산교부세: 일반재원 ·특별교부세: 특정재원 ·소방안전교부세: 일반 및 특정재원	특정재원

출처: 행정안전부(2018b: 93), 국회예산정책처(2018: 142)을 바탕으로 정리

본 연구는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용도와 성격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2. 선행연구의 검토

지역경제 성장과 관련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 결과 또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지역경제 성장과 관련한 연구는 크게 지방재정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Abizadeh and Yousefi, 1988; Akai and Sakata, 2002; Davoodi and Zou, 1998; Hasson and Henrekson, 1994; Iimi, 2005; Morrison and Schwartz, 1996; Thornton, 2007, Xie, Zou

and Davoodi, 1999, Zhang and Zou, 1998), 중앙정부 이전재원과 지역경제 성장 간의 관계(김성순, 2007; 김현아, 2013), 지역경제 성장 요인(강윤호, 2008; 김광춘, 2011; 김종구, 2007; 김재영·배수호, 2017; 김흥배·김대욱, 2000; 유병철·박성익, 2004, 임채홍 외, 2011)로 구분할 수 있다.

1) 지방재정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먼저 지방재정과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 Davoodi and Zou(1998)는 1970년부터 1989년까지 46개 국가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성장과 재정분권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개발도상국의 경우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선진국의 경우에는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Thornton(2007)이 OECD 1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재정분권과 지역경제 성장 간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Iimi(2005)는 1997년부터 2001년 기간 동안의 51개 국가 자료를 활용하여 재정분권이 경제성장(1인당 GDP 성장)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국가 내 자료를 활용한 연구로 Xie, Zou and Davoodi(1999)가 1948년부터 1994년까지의 미국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방정부의 예산비중 확충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내 주 정부를 기준으로 분석한 Akai and Sakata(2002)의 경우에는 지방세출의 증가가 지역경제 성장 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1970년부터 1987년까지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 자료를 분석한 Morrison and Schwartz(1996)도 지방정부 지출이 지역경제 성장 을 유도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다만 OECD 14개 국가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Hasson and Henrekson(1994)와 미국 10개 주정부 자료를 분석한 Abizadeh and Yousefi(1988)의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지출의 증가가 지역경제 성장으로 연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 등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로 박헌수 외(2001)은 1976년부터 1998년까지 구조적 VAR 모형을 이용하여 각 시·도를 대상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출은 서울과 경기도에서 가장 큰 양(+)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김종구(2007)가 우리나라 15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지방재정 지출이 지역경제 성장 및 수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김재영·배수호(2017)의 경우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활용하여 2003~2013년까지의 일반 시와 군 등 기초자치단체의 투자적 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는데, 기초자치단체의 투자적 지출은 지역경제 성장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2)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부의 재정지출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과 관련한 국내의 실

증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며, 분석의 결과도 서로 상반되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현아(2007)의 경우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나라 18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지출과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교부세와 보조금 등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자 조세편익[7]을 설명변수로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의 증가를 통한 지방정부의 세출비중 변화가 해당 지역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세출 증가를 통한 재정정책이 기초자치단체의 경제성장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김성순(2013)은 1990부터 2009년까지 15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세수확대가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지방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의 증가는 지역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성순(2013)은 지방교부금으로 인해 지자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는 경우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저해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최근 사회복지비 급증으로 인한 지방재정 압박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지역경제 성장을 낮추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3) 지역경제 성장요인에 관한 연구

그 외 지역경제 성장요인과 관련한 연구로 김종구(2007)는 콥-더글러스 형태의 생산함수를 고려하여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 15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적자본을 추정하고 패널 분석을 통해 인적자본이 지역경제 성장과 수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인적자본은 분석기간 동안 수도권으로의 집중현상이 나타났으며, 인적자본은 물적자본 보다 지역경제 성장에 더 큰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였다.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지역경제 성장의 요인을 분석한 강윤호(2008)의 연구에서는 제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인구밀도가 증가할수록 지역경제 성장이 촉진되나, 경제활동인구 비율의 증가는 지역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재정적 요인인 경제개발비와 지방재정자립도의 증가가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시킨다고 주장하였는데, 지방정부 예산의 경제개발비 규모가 지역경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유병철·박성익(2004)도 인적자본에 초점을 맞춘 콥-더글라스 형태의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지역경제수렴과 성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인적자본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김흥배·김대욱(2000)의 연구에서도 지역별 성장에 인적자본의 역할이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실제 지역성장을 주도한 생산요소는 자본스톡임을 확인한 바 있다. 김광춘(2011)은 1997년부터 2008년까지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변수들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하였는데 지역수출, 1인당 건축허가면적, 인구 천명당 사회개발비, 인구밀도 등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임

7) 김현아(2007)의 연구에서 '조세편익'은 지방정부 세입과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으로 인한 지방정부 세출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채홍 외(2011)는 1995년부터 2005년 동안 과학기술 인프라와 산업별 특화수준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패널 분석 하였으며, 분석결과 산업특화, R&D 투자, 특허 수 등은 지역경제 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지역소재 대학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한편,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실증 분석연구도 일부 시도된 바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현훈 외(2012)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를 대상으로 부분조정모형(partial adjustment model)을 이용하여 시군별 GRDP 성장률 결정요인을 분석한 바 있다. 이들은 물적자본, 인적자본, 노동력 등으로 구성된 3요소 콥-더글라스(Cobb-Douglass) 생산함수를 활용하였으나 직접적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시군별 자본량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지역별 사업체수를 지역에 투입된 자본량의 대체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노령화가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유소년 인구와 고령인구 등 인구의 연령별 구조를 성장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사업체수 증가가 빠를수록 지역의 일인당 GRDP가 빠르게 성장하지만,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수록 특히 고령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경제성장 속도가 늦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다수의 연구들은 중앙정부 요인보다는 지방정부 요인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다만,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 완화, 외부효과 교정,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등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도외시한 경향이 있다. 또한, 그동안 지역경제 성장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광역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실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기존 연구문헌을 참고하여 지역경제 성장의 영향요인 중 하나인 자본을 대리하는 변수로 지역 내 인구대비 사업체 수 비중을, 노동을 대리하는 변수로 인구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중을 사용하였다. 또한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특성변수로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체수, 노령인구 비중을 활용하였으며, 대도시 경제력의 파급효과를 감안하기 위해 특별·광역시 인접여부 더미 변수를 포함하였다. 또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결정 단위가 광역자치단체임을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8)]

8) 분석에 활용된 모형과 변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Ⅳ장에서 논의한다.

〈표 4〉 지역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변수		내용	연구자
중앙정부 요인	재정분권	개발도상국은 지역경제 성장에 부(-)의 영향	Davoodi and Zou(1998)
		지역경제 성장에 정(+)의 영향	Iimi(2005)
		선진국은 유의미한 영향 없음	Davoodi and Zou(1998)
		유의미한 영향 없음	Thornton(2007)
	중앙정부 이전재원	지역경제 성장에 정(+)의 영향	김현아(2007)
		지역경제 성장에 부(-)의 영향	김성순(2013)
지방정부 요인	지방정부 세출증가	지역경제 성장에 정(+)의 영향	Akai and Sakata(2002), Morrison and Schwartz(1996), 김종구(2007), 박헌수 외(2001)
		지역경제 성장에 부(-)의 영향	Xie, Zou and Davoodi(1999)
		유의미한 영향 없음	Hasson and Henrekson(1994), Abizadeh and Yousefi(1988)
	기초지자체 투자적 지출	지역경제 성장에 정(+)의 영향	김재영·배수호(2007)
	인적자본	지역경제 성장에 정(+)의 영향	김종구(2007), 유병철·박성익(2004)
	경제개발비	지역경제 성장에 정(+)의 영향	강윤호(2008)
	재정자립도	지역경제 성장에 정(+)의 영향	강윤호(2008)
	인구밀도	지역경제 성장에 정(+)의 영향	강윤호(2008), 김광춘(2011)
	자본스톡	지역경제 성장에 정(+)의 영향	김광춘(2011)
	산업특화	지역경제 성장에 정(+)의 영향	임채홍 외(2011)
	R&D 투자	지역경제 성장에 정(+)의 영향	임채홍 외(2011)
	지역별 사업체수	지역경제 성장에 정(+)의 영향	이현훈 외(2012)

Ⅲ. 기초자치단체 지역경제 및 중앙정부 이전재원 현황

1. 기초자치단체 지역경제 현황

〈표 5〉는 분석대상 기간(2009~2015) 중 2010년 기준 실질금액으로 환산한 1인당 GRDP 금액 현황을 나타낸다. 이에 따르면 분석대상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1인당 GRDP 금액은 2009년 평균 2,120만원에서 2015년 3,2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즉, 생산측면에서 집계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제력은 매년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인당 GRDP 금액의 표준편차는 2009년 707만원 수준에서 2015년 1,17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별로 경제력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5〉 1인당 GRDP 금액 및 성장률

(단위: 만원, %)

구분	전 체				시	군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평균	평균
2009	2,120 (12.0)	707 (9.6)	1,260 (-13.9)	5,380 (40.4)	2,170 (8.3)	2,120 (12.0)
2010	2,350 (9.2)	922 (9.8)	1,350 (-21.4)	6,670 (47.4)	2,510 (13.0)	2,350 (9.2)
2011	2,520 (7.1)	977 (8.0)	1,430 (-27.4)	7,730 (23.3)	2,710 (7.0)	2,520 (7.1)
2012	2,650 (4.7)	1,060 (6.7)	1,490 (-21.4)	8,190 (19.0)	2,820 (4.8)	2,650 (4.7)
2013	2,750 (4.7)	954 (9.0)	1,570 (-25.9)	6,900 (27.3)	2,980 (6.9)	2,750 (4.7)
2014	2,930 (5.5)	1,120 (8.1)	1,590 (-12.4)	7,650 (34.6)	3,110 (4.7)	2,930 (5.5)
2015	3,200 (9.0)	1,170 (7.8)	1,800 (-11.2)	7,470 (30.1)	3,310 (7.0)	3,200 (9.0)

주: ( )은 1인당 GRDP 성장률임

2. 중앙정부 이전재원 현황

〈그림 1〉은 2009년~2015년 기간 중 교부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총액 추이를 나타낸다. 2009년 각각 18조 56억원과 17조 2,972억원이었던 지방교부세와 국고조보금은 2015년 현재 각각 32조 4,795억원과 24조 9,604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2년 이후 국고보조금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2009년 이후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규모 추이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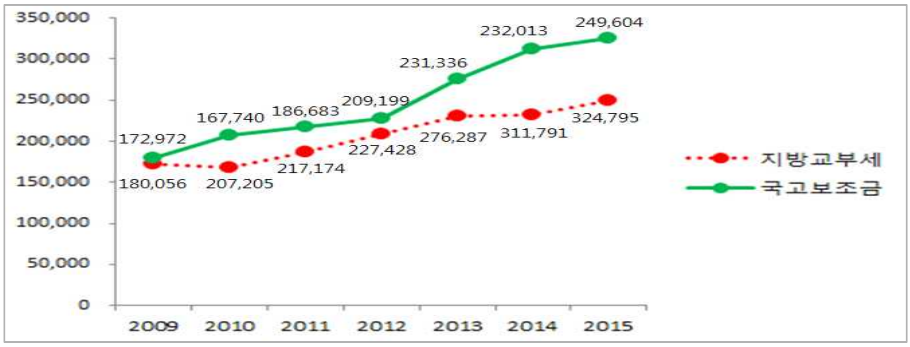

주: 세입 당초예산 순계 기준
출처: 행정안전부, 각 연도별「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을 바탕으로 작성

Ⅳ. 분석방법

1. 분석모형 및 변수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가 기초자치단체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정부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Barro(1990)의 내생적 성장모형을 이용한 Kneller et. al.(1999)의 분석 모형에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변수를 포함시킨 성장회귀방정식을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지역경제 성장회귀방정식을 설정한다.

$$g_{it} = \alpha_0 + \sum_{b=1}^{k}\beta_b Y_{bit} + \sum_{f=1}^{m}\gamma_f K_{fit} + \sum_{g=1}^{n}\delta_g Z_{git} + \alpha_1 \ln Grant_{it} + \alpha_2 \ln Sub_{it} + \epsilon_{it} \text{ ---------- 식(1)}$$

식(1)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된 g_{it}는 지역경제 성장 을 측정하는 변수로 t년도 i지역의 1인당 GRDP 성장률이다. 설명변수인 Y_b는 지방정부 재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지역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지역 내 인구 당 사업체수 비중, 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중, 전년도 1인당 실질 GRDP 규모이다. 여기서 지역 내 인구 당 사업체수 비중은 지역 내 자본을 대리하는 변수로, 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노동을 대리하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K_f는 지방재정의 역할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들로 GRDP 대비 세입규모 비중 및 GRDP 대비 세출규모 비중이다. 여기서 GRDP 대비 세입규모 비중은 기초자치단체가 거두어들이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등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값이며, GRDP 대비 세출규모 비중 또한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출한 재정지출에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지출규모를 제외한 값이다.[9] Z_g는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별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벡터로 고령인구 비중, 지역 내 대기업체 수, 특별·광역시 인접여부 더미, 광역자치단체 더미 등의 변수들을 의미한다.

$\ln Grant_{it}$는 t년도의 i지역의 지방교부세, $\ln Sub_{it}$는 t년도 i지역의 국고보조금이며, ϵ_{it}는 고전적 오차항으로 지역 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관찰할 수 없는 비체계적 요인 또는 충격에 해당한다.

한편, 식(1)의 성장회귀방정식에 포함된 설명변수인 지방교부세($\ln Grant_{it}$)에 대해서는 내생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정부가 각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는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방정부 재정력 등에 따라 재원보장 및 재정형평화를 목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이다. 즉, 모형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지역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지방교부세 배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일 지방교부세가 내생성을 가질 경우 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않고 그대로 분석에 활용하게 되면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없

9) Kneller et. al(1999)는 22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정부의 세입 및 세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통제하기 위해 GDP 대비 세입 비중과 GDP 대비 세출 비중을 모두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다만, 이들은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부재정의 특성을 감안하여 세입과 세출의 재정관련 변수들이 가질 수 있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균형재정의 개념이 활용되지 않는 지방재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재정관련 항목을 선별하여 제외하지 않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교부세가 가질 수 있는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도구변수를 이용한 2SLS(two-stage least squares) 추정을 함께 시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교부세 배분 결정모형을 식(2)와 같이 설정한다.

$$\ln Grant_{it} = \kappa_0 + \kappa_1 fir_{it-1} + \kappa_2 \ln pop_{it-1} + u_{it} \quad \text{---------- 식(2)}$$

여기서, 도구변수로 사용된 fir은 i 지역의 t-1년도 재정자립도로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변수이며, $\ln pop$는 i 지역의 t-1년도 인구규모로 해당 지자체의 재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변수이다.

지방교부세 도구변수 선정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김애진(2018)의 연구를 참조하여 지방교부세의 주요 목적인 재원보장 및 재정형평화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자립도'와 '인구규모'를 지방교부세의 도구변수로 선정하였다.[10] 아울러 적절한 도구변수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와는 상관관계가 있으나, 경제성장과는 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자립도와 인구규모변수가 도구변수로 적절히 선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들 변수를 지방교부세와 1인당 GRDP 성장률에 각각 회귀분석하여 상관관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전년도 재정자립도는 지방교부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나, 1인당 GRDP 성장률에는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규모는 지방교부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인당 GRDP 성장률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 변수를 지방교부세의 도구변수로 선정하였다.[11]

본 연구는 도구변수를 이용한 추정을 위해 1단계로 식(3)의 회귀식을 추정한 후 이 추정결과를 활용하여 지방교부세 적합값을 산출한다. 2단계로 1단계에서 식(3)을 이용해서 산출한 지방교부세 적합값을 활용하여 식(1)을 추정하도록 한다.

$$\begin{aligned}\ln Grant_{it} = \rho &+ \sum_{b=1}^{k} \omega_b Y_{bit} + \sum_{f=1}^{m} \lambda_f K_{fit} + \sum_{g=1}^{n} \xi_g Z_{git} \\ &+ \upsilon \ln Sub_{it} + \phi_1 fir_{it-1} + \phi_2 \ln pop_{it-1} + \epsilon\end{aligned} \quad \text{---------- 식(3)}$$

식(1)의 성장회귀방정식에서 본 연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핵심적 정책변수는 지방교부세와 국

10) 지방교부세의 배분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요인에 관련 실증연구 결과는 많지 않은 실정으로, 김애진(2018)은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의 배분과 관련하여 정치적, 환경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이 특별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한 바 있으며, 경제적 요인으로 재정자립도, 인구규모, 예산대비 채무비율 등을 설명변수로 활용한 바 있다.

11) 인구규모의 경우 생산함수의 투입요소이기는 하나, 식(1)의 성장회귀방정식에서 인구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설명변수로 사용되었고, 식(2)의 인구규모는 해당 지역 총인구에 로그를 취한 값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재정수요를 통제하기 위한 도구변수로 선정하였다.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차병섭 외(2013)의 연구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인구규모를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도구변수로 활용한 바 있다.

고보조금이다.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지방교부세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상의 원조로, 지방교부세가 각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완하여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ln Grant_{it}$ 와 $\ln Sub_{it}$ 의 회귀계수는 양(+)의 부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앙정부 이전재원은 지방정부의 노력과 무관하게 관련 법령·정책제도 또는 중앙정부의 재량 등에 의해 배분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수반할 수 있다. 또한 책정된 예산을 다 소진하더라도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거나 지방채 발행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12]하에서는 예산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경우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n Grant_{it}$와 $\ln Sub_{it}$의 회귀계수는 음(-)의 부호를 가질 것이다.

한편, 지방정부 재정의 역할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인 GRDP 대비 세입규모 비중 변수는 지방정부의 세입확대가 지역 내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경우 경제성장을 저해하여 지역경제 성장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GRDP 대비 세출규모 비중 변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의 확대가 경제성장을 촉진할 경우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특성 변수 중 지역 내 대기업체 수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체 중에서 종사자 규모가 300인 이상인 사업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역 내 대기업이 많을 높을수록 1인당 GRDP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인구 중 노령인구 비중 변수는 지역 내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노령화 정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다. 선험적으로는 은퇴연령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경제성장이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산의 축적정도와 소비여력 등에 따라서는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패널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통적 패널분석방법(panel data analysis)을 적용해 식(1)의 회귀방정식을 추정한다. 한편, 분석 대상 자료가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이 아닌 우리나라 시·군 기초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 결과 확률효과모형(RE: Random effects model)보다 고정효과모형(FE: Fixed effects model)이 선호되어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한 추정결과를 제시하기로 한다. 아울러, 지방교부세에 제기될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여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2SLS로 추정한 분석결과를 함께 제시하며, 패널 개체의 개별효과를 통제한 경우와 통제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기 위해 보통최소자승추정법(OLS: ordinary least squares estimation method)으로 추정한 결과도 함께 제시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시·군 그룹별 특성을 감안하여 분석대상 기초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와 시·군 각 그룹별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도 같이 제시하도록 한다.

---

12) 지방정부가 책정된 예산을 다 소진하더라도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거나 지방채 발행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으면 예산제약이 유연하다고하며, 이를 일반적으로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이라 한다.

2. 분석자료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 중 지역별 사업체 관련 자료는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하였다. 지역 내 대기업체 수는 종사자 규모가 300인 이상인 사업체 수이며, 인구관련 자료는 국가통계포털의 e-지방지표를 사용하였다. 노령인구 비중은 각 지역별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해당 지역 총 인구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지역별 GRDP 자료는 각 도청 홈페이지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제공되는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1인당 GRDP 금액은 지역별 GRDP 금액을 해당 지역 인구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였고, GRDP 금액과 국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화폐변수는 모두 GDP 디플레이터(2010=100)를 사용하여 실질금액으로 전환하였다.

〈표 6〉 변수 설명

변수	설명
gr_grdp	1인당 실질 GRDP 성장률(%)
lnbuss	지역 내 인구 천명 당 사업체 수 로그값
la_ratio	지역 내 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중(%)
l_grdp	전년도 1인당 GRDP 로그값
lnrpgrant	지방교부세 log 값
lnrpsub	국고보조금 log 값
grdp_rev	GRDP 대비 지방정부 세입 규모 비중(%)
grdp_exp	GRDP 대비 지방정부 세출 규모 비중(%)
lnbig	지역 내 300인 이상 기업체수 log 값
oldratio	지역 내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중(%)
dist_1	특별시·광역시 인접여부 더미변수 (인접한 경우 1, 아닌 경우 0)
dist_2	각 광역자치단체별 더미변수

〈표 6〉은 분석에 활용된 변수들에 대한 설명을 정리한 것이며, 이들 변수의 요약통계량은 〈표 7〉과 같다.

〈표 7〉 요약통계량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gr_grdp	1015	0.074	0.081	−0.274	0.473
lnbuss	1015	4.279	0.165	3.630	4.884
la_ratio	1015	67.03	5.005	55.6	78.0
l_grdp	1015	16.955	0.403	15.916	18.360
lngrant	1015	25.571	0.694	16.349	26.708
lnsub	1015	25.434	0.504	23.152	27.078
grdp_rev	1015	0.152	0.080	0.021	0.593
grdp_exp	1015	0.084	0.042	0.010	0.340
lnbig	981	1.290	1.113	0	4.174
oldratio	1015	19.68	7.714	6.00	36.6

〈표 7〉에 따르면, 분석대상 종속변수인 1인당 GRDP 성장률(gr_grdp)는 2009년부터 2015년 기간 중 평균 7.4% 증가하였으며, 표준편차는 8.1%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경제성장률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의 자본을 대리하는 변수인 인구 천명 당 사업체수 로그값(lnbuss)은 4.279였으며, 지역 내 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중(la_ratio)은 평균 67.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대기업체 수 로그값은 평균 1.290이었으나, 표준편차가 1.113으로 나타나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대기업체 수의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구특성을 통제하는 변수인 노인인구 비중(oldratio)의 평균값은 19.7%로 분석대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노령화가 상당히 진전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GRDP 대비 세입규모 비중은 평균 0.152, GRDP 대비 세출규모 비중은 0.084로 분석대상 기간 중 각 기초자치단체가 거두어들인 세입규모는 GRDP 대비 평균 15.2% 수준이었으며, 세출규모는 GRDP 대비 평균 8.4%였다.

분석대상 기간 중 각 기초자치단체에 지급된 지방교부세 로그값(lnrpgrant)은 25.57, 국고보조금 로그값(lnrpsub)은 25.43으로 서로 비슷한 규모였으나, 지방교부세의 표준편차(0.694)가 국고보조금 표준편차(0.504)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배분되는 지방교부세 규모가 각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표 8〉은 1인당 GRDP 성장률에 대해 분석에 활용된 설명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상관계수를 보여준다. 〈표 8〉을 살펴보면, 1인당 GRDP 성장률은 지역 내 인구 대비 사업체수 및 인구 대비 경제활동 인구 비중 변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이 높고 인구 대비 사업체 수가 많을수록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직관적인 예상과 다른 결과이다. 또한 전년도 1인당 GRDP 규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정부의 이전재원과 관련해서는 1인당 GRDP 성장률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변수 간에는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이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국고보조금의 상관계수(-0.04)가 지방교부세 상관계수(-0.03)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국고보조금이 지방교부세보다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의 세입확대는 지역경제 성장과 음(-)의 상관관계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은 지역경제 성장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대기업체 수 변수의 경우 지역경제 성장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고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노령인구 비중 변수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에 대한 단순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대부분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의 이전재원과 지역의 재정·경제적 특성들이 기초자치단체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한 회귀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음 장에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표 8〉 1인당 GRDP 증가율(gr_grdp)과의 상관계수 행렬(2005~2015)

변수명	gr_grdp	lnbuss	la_ratio	l_grdp	lnrpgrant	lnrpsub	grdp_rev	grdp_exp	lnbig	oldratio
gr_grdp	1									
lnbuss	-0.05	1								
la_ratio	-0.01	-0.78	1							
l_grdp	-0.17*	0.16*	0.15*	1						
lngrant	-0.03	0.29*	-0.27*	0.01	1					
lnsub	-0.04	0.10	0.18*	0.17*	0.61*	1				
grdp_rev	-0.02	0.11	-0.59*	-0.46*	-0.06	-0.41*	1			
grdp_exp	0.03	0.04	-0.33*	-0.51*	-0.21*	-0.40*	0.86*	1		
lnbig	0.01	-0.19*	0.75*	0.31*	-0.08	0.49*	-0.67*	-0.46*	1	
oldratio	-0.05	0.20*	-0.96*	-0.15*	0.30*	-0.18*	0.62*	0.34*	-0.76*	1

주: *는 p〈0.01임. 즉 상관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1% 유의수준에서 기각함을 의미

V. 분석결과

〈표 9〉는 식(1)의 회귀방정식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9〉에서 모형 1은 보통최소자승추정법(OLS)을 사용해 추정한 결과이며, 모형 2는 전통적 패널분석 모형인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한 추정결과를, 모형 3은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2SLS 추정법으로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패널모형 추정결과, 개별그룹효과가 0이라는 귀무가설이 모두 기각되어 OLS로 추정한 모형 1의 추정결과는 참고로만 활용하도록 한다. 한편 지방교부세 변수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내생성 문제와 관련하여 모형 3의 추정결과에 대해 Davidson - MacKinnon test[13]를 시도한 결과, 도구변수를 이용하지 않은 모형(모형 2)의 추정결과가 일치추정량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으며, 모형 3의 추정결과와 모형 2의 추정결과가 계수추정치의 부호와 통계적 유의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후에서는 모형 2의 추정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먼저 〈표 9〉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수는 중앙정부 이전재원 관련 변수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변수이다. 〈표 9〉에 따르면 분석 대상 시·군 전체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모두 양(+)의 계수추정치를 갖고 있으며, 두 변수의 계수 추정치 모두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표 8〉에서 살펴본 단순 상관관계 분석과는 반대되는 결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 지방교부세와 함께 용도가 지정되어 일정규모의 지방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국고보조금도 지역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이 시·군 지역의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며, 중앙정부로부터

13) Davidson - Mackinnon test의 귀무가설은 도구변수를 이용하지 않은 고정효과모형의 추정결과가 일치추정량이라는 것으로, 귀무가설이 기각될 경우에는 내생성을 고려하여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추정해야 함(Davidson and Mackinnon 1993, Wooldridge 2000)

의 이전재원이 지방정부의 세출증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성장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김현아(2007)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시와 군을 구분하여 각 그룹별로 분석한 결과도 이와 같은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시의 경우 국고보조금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지방교부세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고 있어, 시 단위 지역에 있어 국고보조금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확인되었으나, 지방교부세가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았다. 반면 군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변수 모두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모두 유의하여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중앙정부 이전재원은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경제성장에 긍정적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지방교부세가 시 지역과 군 지역 지자체의 경제성장에는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경제규모에 따라 재정력이 양호한 지자체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교부세가,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에는 보다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는 지방교부세의 특성이 반영되어 군 지역에 배분된 교부세가 시 지역에 배분된 교부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방교부세는 해당 지자체에서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경제상황이 취약한 군 지역이 중앙정부로부터 배분된 교부세를 경제성장 목적에 사용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사용목적별 교부세 활용 규모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확보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 재정의 역할을 통제하기 위한 GRDP 대비 세입규모 비중 변수는 분석대상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분석한 결과와 시·군 그룹별로 각각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 계수추정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의 세입확대가 지역 내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왜곡 등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GRDP 대비 세출규모 비중 변수의 경우 분석대상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분석한 결과와 시·군 그룹별로 각각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계수추정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설명변수들에 대한 계수 추정결과, 지역 내 사업체 수 변수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시·군 그룹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모두 양의 계수 추정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내 사업체 수가 많을수록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선험적 예측에 부합되는 결과이다. 다만, 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고 있어 시 지역에서의 영향은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중 변수의 경우, 시와 군을 구분한 분석결과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모두 계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내 노동 공급의 증가가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직관적 예상과 부합하는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전년도 1인당 GRDP 변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추가적인 투자에 따른 생산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타당한 추정결

과인 것으로 보인다.[14)]

지역 내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체 수 변수의 경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추정결과 뿐 아니라 시·군· 그룹별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에서 모두 양(+)의 계수 추정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군 지역을 대상으로 한 추정결과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 수의 증가는 시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군 지역의 경우에는 대기업 수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았다.

노령인구 비중 변수의 경우 전체 및 시·군별 추정결과에서 모두 양(+)의 계수추정치를 보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표 8〉의 상관관계 분석과는 다른 결과로, 노령인구 비중이 높을수록 1인당 GRDP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령인구 비중의 증가가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표 7〉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고령화가 진행된 시·군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노령인구가 지역경제 성장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노령인구 종사의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농·수산업 등의 산업별 종사자 특성과 취업·자영업 등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 중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연령계층별 자산 및 소득구조 등의 정보를 확보하여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4) 김성순(2013)의 연구에서도 같은 이유로 GRDP 수준의 증가가 지역경제 성장률을 낮춘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바 있다.

〈표 9〉 추정결과

구분	전체			시			군		
	모형 1: OLS	모형 2: FE	모형 3: FEIV	모형 1: OLS	모형 2: FE	모형 3: FEIV	모형 1: OLS	모형 2: FE	모형 3: FEIV
lnbuss	0.021	0.211***	0.212***	−0.002	0.038	−0.065	0.043	0.318***	0.321***
	(0.019)	(0.057)	(0.064)	(0.025)	(0.075)	(0.117)	(0.029)	(0.086)	(0.088)
labor_ratio	−0.005**	0.017***	0.016*	−0.006**	0.015**	0.031**	−0.003	0.018*	0.020
	(0.002)	(0.005)	(0.009)	(0.002)	(0.007)	(0.015)	(0.003)	(0.010)	(0.015)
l_grdp	−0.058***	−0.553***	−0.554***	−0.071***	−0.465***	−0.439***	−0.090***	−0.651***	−0.643***
	(0.007)	(0.027)	(0.031)	(0.010)	(0.036)	(0.044)	(0.015)	(0.040)	(0.059)
lngrant	−0.001	0.020*	0.021	−0.010	0.001	−0.100	−0.026	0.080*	0.050
	(0.005)	(0.013)	(0.062)	(0.006)	(0.013)	(0.080)	(0.022)	(0.047)	(0.163)
lnsub	−0.020**	0.071***	0.071***	−0.018*	0.047**	0.059**	0.003	0.083***	0.081**
	(0.008)	(0.018)	(0.019)	(0.010)	(0.021)	(0.025)	(0.019)	(0.031)	(0.032)
grdp_rev	−0.475***	−1.486***	−1.487***	−0.168	−1.220***	−1.149***	−0.429***	−1.595***	−1.572***
	(0.097)	(0.171)	(0.175)	(0.241)	(0.378)	(0.403)	(0.124)	(0.204)	(0.236)
grdp_exp	0.354**	1.064***	1.067***	−0.605*	0.002*	−0.429	0.362**	1.313***	1.262***
	(0.144)	(0.195)	(0.222)	(0.351)	(0.458)	(0.593)	(0.183)	(0.242)	(0.358)
lnbig	0.014***	0.021**	0.021**	0.016***	0.027**	0.020	0.022***	0.010	0.010
	(0.004)	(0.010)	(0.010)	(0.006)	(0.013)	(0.015)	(0.007)	(0.014)	(0.015)
oldratio	−0.000	0.046***	0.045***	0.001	0.043***	0.058***	−0.000	0.046***	0.049***
	(0.001)	(0.005)	(0.009)	(0.001)	(0.007)	(0.013)	(0.002)	(0.009)	(0.017)
상수항	1.891***	4.350***	4.338***	2.424***	5.002***	5.926***	2.230***	3.483***	3.928
	(0.278)	(0.479)	(0.736)	(0.360)	(0.630)	(0.984)	(0.579)	(1.114)	(2.576)
관측치 수	981	981	981	476	476	476	505	505	505
그룹 수		144	144		68	68		76	76
R^2/ adj R^2	0.06	0.05	0.05	0.09	0.04	0.04	0.08	0.05	0.05
F-test		3.65[0.000]	3.44[0.000]		2.95[0.000]	2.22[0.000]		4.22[0.000]	3.94[0.000]
Hausman test		288.56[0.000]	3932.48[0.000]		114.98[0.000]	31.28[0.000]		173.78[0.000]	969.29[0.000]
DM test			0.0004[0.983]			1.90[0.168]			0.036[0.848]

주 1) ( )는 표준오차이며, [ ]는 p값임. F-test는 각 개체별 개별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에 대한 F 값이며, 모형2와 모형 3에서 Hausman test는 확률효과 모형에 대한 χ^2값임. DM test는 Davidson-MacKinnon Tests값으로 모형 3의 지방교부세 변수에 대한 내생성 검증결과임

2) *** p〈0.01, ** p〈0.05, * p〈0.1임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2009~2015년 기간 동안 14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대상 전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분석과 함께 시·군 각 그룹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전통적 패널분석 방법 이외 지방교부세가 가질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여 도구변수를 활용한 2SLS 추정법을 이용한 분석도 함께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대상 기초자치단체 전체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추정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은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족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이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방정부의 세입확대는 지역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사업체수가 많을수록 지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기업체 수 또한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역 내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을수록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노인인구 비중의 증가는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노령화가 진행된 시·군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나, 보다 엄밀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노령인구와 관련한 세부적인 자료의 축적과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군을 그룹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시와 군 지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시 지역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확인되었으나, 지방교부세의 영향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군 지역의 경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모두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은 도출할 수 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을 높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지역경제 성장에 유의미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이들 이전재원이 부족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지방교부세는 지출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특성이 있어 지방정부의 연성예산제약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를 수반할 수 있으며, 특정 용도에만 사용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지방비 부담을 유발하는 국고보조금[15]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완화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5) 행정안전부(2018b)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평균 8.3%p 증가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지방 정부 부담금은 평균 10.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목적 사업에 지방비가 활용되었음을 의미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자구노력에 대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앙정부 이전재원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를 절감하거나 행사·축제성 경비를 절감하는 등의 세출 효율화 노력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거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입확충을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의 경우 지방에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안에 대해 심의하는 유일한 위원회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조율 체계를 단순화하고 분야별 대응지방비 추계 등을 통해 지방비 부담 수준을 파악하여 지방부담 수준을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성장은 중앙정부 이전재원과 함께 지역 내 사업체수 및 고령화 추이 등 지역의 산업 및 인구구조 등에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각 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제성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지역 내에 소재한 기업체 수 및 대기업체 수의 차이가 큰 실정이며, 지역 내 인구 노령화 수준도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의 상황에 대응하여 지역의 인적자본 개발, 지역산업육성 강화 등의 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가능한 모든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주로 광역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한 기존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활용된 변수 이외에 기초자치단체의 경제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용구조, 소득구조 및 기업가 정신, 지식자본 등 각 자치단체별 다양한 특성과 요인들이 자료수집의 문제로 인해 적절히 포함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과 관련한 세입 및 세출 자료를 보다 세부적으로 목적별로 구분하여 활용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지역경제 성장과 관련한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자료의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가 활용한 GRDP 지표 이외에 소득 및 분배 측면에서 지역경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보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강윤호 (2008).「지역경제 성장의 영향요인 분석」,『한국행정학보』제42권 제1호, 한국행정학회, pp.365-381.

김광춘 (2011).「지역경제 성장 의 영향요인과 요인별 기여도에 관한 연구」, 강원

김성순 (2013).「지방재정과 지역경제 성장 과의 관계분석」,『재정학연구』제6권 제1호(통권 제76호), 한국재정학회, pp.27-56.

김애진 (2018).「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특별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를 중심으로」,「한국지방재정논집」제23권 제1호, 한국지방재정학회,

pp.57-99
김재영·배수호 (2017).「투자적 지출이 지역경제 성장 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일반 시· 군을 중심으로」,『국정관리연구』 제12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pp.55-80.
김정훈 (2010).「재정분권과 지역경제 성장의 수렴」,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김종구 (2007).「지역경제력 격차와 지방정부의 공공재정지출이 지역경제 성장 에 미친친 영향: 동태적 패널분석의 적용」,『한국동서경제연구』 제19집 제1권, 한국동서경제학회, pp.119-142.
김종섭 (2003).「지역성장의 요인과 수렴성향에 관한 연구」,『산업경제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산업경제학회, pp.31-53
김현아 (2007).「재정분권과 지역소득」,『재정논집』 제21권 제2호, 한국재정학회, pp.1-21.
김홍배·김대욱. (2000).「인적자본과 지역성장의 실증분석에 관한 연구」,『국제지역연구』 제16권 제2호, 국제지역학회, pp.67-81.
국회예산정책처 (2018).「대한민국 지방재정 2018」
문광민 (2017), 재정분권이 지역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 패널분위수 회귀모형을 이용한 분포효과 검토,『지방정부 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지방정부학회.
문시진·이기동·이우형 (2016).「지방재정지출이 지역의 경제성장, 고용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경제연구』 제34권 제2호, 한국경제통상학회, pp.33-59.
박완규 (2009).「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 분석 및 완화방안의 모색」,『입법과 정책』제1권 제1호, 국회입법조사처, pp.109-134.
박완규 (2008).「지역 간 경제력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가?」,『응용경제』제10권 제1호, 한국응용경제학회, pp.197-223.
박헌수·조규영·노춘희·김군수 (2001).「지역간, 산업간 연계를 고려한 지역경제 성장 요인에 관한 연구」,『국토계획』 제36권 제3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pp.177-191.
백운현 (2004).「부산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효과적 재정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
서재권·김태완 (2016).「지역경제 성장 의 정치적 결정요인: 광역자치단체 간 교차분석(1995-2014)」,『한국정치학회보』 제50집 제4호, 한국정치학회, pp.171-198.
손희준 (2017).「지방자치 재정분권 강화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 자료, 2017.4.
유병철·박성익 (2004).「지역소득 수렴여부와 성장요인 분석: 동태적 이질적 패널모형의 활용」,『국제경제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국제경제학회, pp.105-126
이수창·이환범 (2017).「지역경제 성장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16개 광역시·도를 중심으로」,『한국행정논집』제29권 제2호, 한국정부학회, pp.231-251.
이순배 (2009).「 시군 지방소득세 도입의 재정효과 분석」,『재정학연구』, 제2권 제1호(통권 60호), 한국재정학회, pp.130-162.
이현훈·이문희·박세준 (2012).「기초자치지역의 경제성장 요인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경제발전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경제발전학회, pp.91-124.
임응순·이종하 (2017).「연구개발투자와 지역경제 성장 간의 관계 분석」,『산업경제연구』제30권 제2호, 한국산업경제학회, pp.793-817.

임성일 (2013).「지역 간 경제력 격차문제에 대한 접근: 격차측정기준과 정부간 재정이전제도를 중심으로」,『응용경제』제15권 제2호, 한국응용경제학회, pp.175-210.

임채홍·함요상·김정렬 (2011).「과학기술인프라와 산업별 특화수준이 지역경제 성장 에 미치는 효과 분석」,『한국사회와 행정연구』제21권 제4호, 서울행정학회, pp.309-342.

주운현·홍근석 (2011).「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 에 미치는 영향: 거시경제안정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지방정부연구』제15권 제3호, 한국지방정부학회, pp.235-256.

최병호·정종필 (2001).「재정분권화와 지역경제 성장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재정분권화지표의 개발과 실증분석」,『한국지방재정논집』제6권 제2호, 한국지방재정학회, pp.79-96.

행정안전부 (2018a).「2017년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 보고」

행정안전부 (2018b).「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홍근석 (2013). 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 에 미치는 영향분석: V0의 재정분권지수를 중심으로,『지방행정연구』제27권 제2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Abizadeh, Sohrab and Yousefi, Mahmood (1988). An empirical er-examination of Wagner's law, Economics Letters, 26, pp.169-173

Akai, Nobou and Masayo Sakata (2002). Fiscal decentralization Contributes to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State-level Corss-section Data for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Urban Economics, 52, pp.93-108

Aschauer, D. (1989). Is Public Expenditure Productive?,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3(2), pp.687-700.

Barro, R. J (1990). Government Spending in a Simple Model of Endogenous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 pp.103-125

Buchanan, J. M. and Wagner, R. E. (1970). An Efficiency Basis for Federal Fiscal Equalization, The Analysis of Public Output, 70(1), pp.139-162.

Davidson, R and MacKinnon, J. Estimation and Inference in Econometrics, 1993,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Davoodi, Hamid and Heng-fu Zou (1998),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A Corss-Country Study, Journal of Urban Economics, 43, pp.244-257

Easterly, W. and S. Rebelo. (1993). Fiscal Policy and Economic Growth: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32(3), pp.417-458.

Fisher, R. C. (1979). A Theoretical View of Revenue Sharing Grants, National Tax Journal, 32(2), pp.173-184.

Gramlich, E. (1994). Infrastructure Investment: A Review Essa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2(3), pp.1176-1196.

Hansson, Par and Henreken, Magnus (1994). A new framework for testing the effect of government spending on growth and productivity, Public Choice, 81 pp.381-401

Iimi, Atsushi (2005).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Revisited: an Empirical Note,

Journal of Urban Economics 57, pp.449-461

Jun, S.K (1989). Essays in Political Economy of National Aid Distribution in Korea during 1962-1985.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Kneller, R, Michael F. B, Norman Gemmell (1999), Fiscal Policy and Growth: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74. pp.171-190

Morrison, G. and A. Schwartz. (1996). State Infrastructure and Productive Performance, American Economic Review, 86, pp.1095-1111.

Rosen, H. (1985). Public Finance. Homewood: Richard D. Irwin, INC.

Thorton, John (2007).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reconsidered, Journal of Urban Economics, 6, pp.64-70

Wolf, C. (1988). Markets of Governments: Choosing between Imperfect Alternatives. Cambridge: MIT Press.

Wooldridge, J. Introductory Econometrics: A Modern Approach, 2000, New York, South-Western College Publishing

Xie, Danyang and Heng-fu Zou, Hamid Davoodi (1999).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Urban Economis, 45, pp.228-239

Zhang, T. and H. Zou (1998). Fiscal Decentralization, Public Spending,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7, pp.221-240

김민창(金玟昌):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논문: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에 대한 세가지 실증분석, 2013)를 취득하고, 현재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산업조직, 지역경제 성장 등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對중국 교역이 국내 제조업의 고용량과 임금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2017)", "중국의 기술혁신과 지역경제 성장 간의 상호관계 연구(2017)" 등이 있다(mckim0824@assembly.go.kr).

김애진(金愛眞):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대추구 유인에 관한 실증연구, 2016)를 취득하고, 현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과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예산과정, 지방재정, 지방행정 등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재정분권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2018)",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특별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를 중심으로(2018)" 등이 있다(amazona00@naver.com).

〈논문접수일: 2019. 8. 9 / 심사개시일: 2019. 8. 16 / 심사완료일: 2019. 9. 30〉

Abstract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s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by Local Governments: Panel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Instrument Variables

Kim, Minchang

Kim, Aejin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the intergovernmental financial transfers such as categorical-grant and the local share tax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by using the data of 144 local governments from 2009 to 2015. For this study, panel regression analysis using tool variables was performed in addition to analysis by local government on the growth of the local economy based on the GRDP increase rate per person categorized by city and province.

It was confirmed in this results that resources transferr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such as government subsidies and local subsidies have created a positive influence.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resource transfer system in such a way that it will foster and motivate the voluntary efforts of the local governments seeking self-sufficiency in order to accomplish the original purpose of the resource transfer system which is to pursue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the resources and ease the levels of inequality among local governments.

Given such conditions, it will be important for the basic local government to seek effective policy measur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and the reinforcement of the local economy to overcome circumstantial weaknesses.

Key Words: categorical-grant, local share tax, regional economic growth, instrument variable, panel regression